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2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안 제4조, 제5조)
- 라.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안 제6조)
- 마. 시설물 감면규정(안 제 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2-3396-5305, 팩스 : 02-3396-8721, email : joanne21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구민이용 공공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때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감면규정)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5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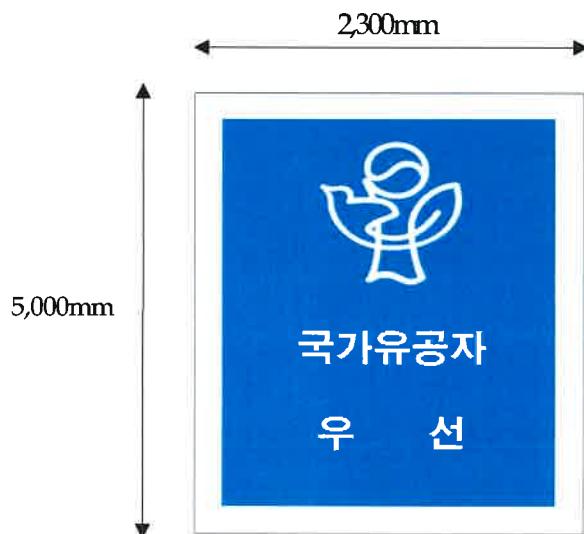
가. 규격 : 바닥면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700mm × 세로 600mm

나. 색상 : 하늘색(바닥면), 흰색(글자, 문양)

2. 도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큰나무’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

